문서번호	시설관리팀-71
등록일자	2025.01.13
결재일자	2025.01.13
공개여부	공개

주임	팀장	본부장	원장		결재
김배광	유관희	김영무	김도영		
협조자				*협조란의 결재 서열은 정해진 셀값으로 인해 순서가 바뀔수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안전보고서 공시

한국전통문화전당

○ 2024년 산업안전 보건 계획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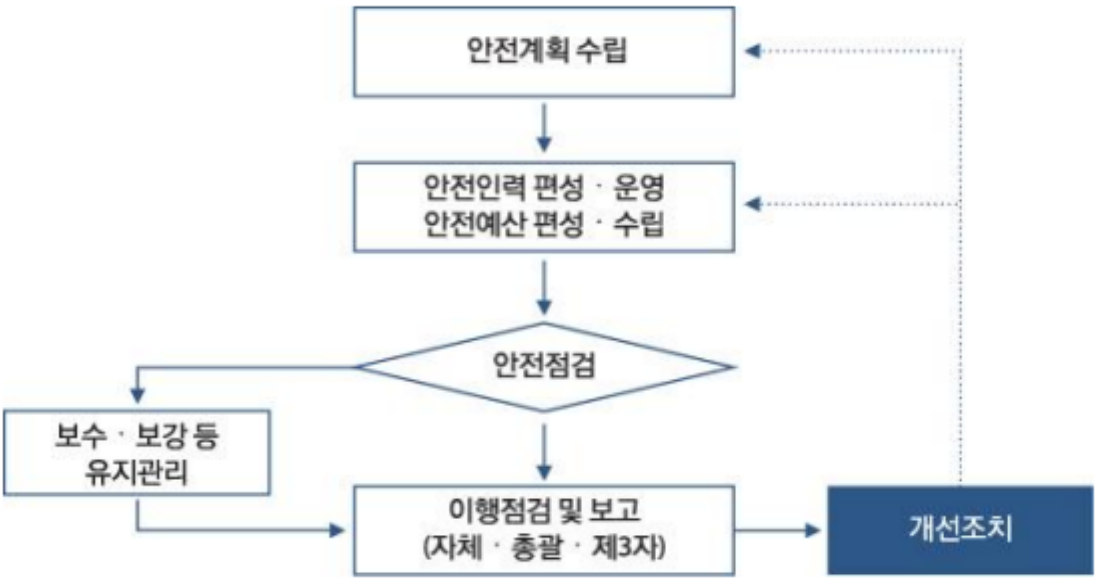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01	안전계획 수립·이행	· 안전계획수립(연1회)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확보 및 예산편성 ·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02	필요한 인력 및 예산확보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안전점검 등 실시예산 · 안전계획을 이행할 인력,예산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인력, 소요예산
03	안전점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및 수행
	유지관리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 및 수행
04	이행점검	· 안전계획(인력·예산·점검 포함) 반기 1회 이상 점검
	개선조치	· 점검결과에 따라 인력배치, 예산추가편성·집행 등 필요 조치
05	위기관리 절차 마련 및 이행	·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06	도급·용역·위탁관리	· 수급자 안전관리능력·필요한 비용 평가기준마련, 연 1회 이상 이행점검
07	종사자의 참여	·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의견반영, 반기 1회 이상 이행점검
0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 업무수행평가 기준 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점검개요

○ 점검시기 : 정기점검(연 2회), 특별점검(사고 발생시), 수시점검(작업전·중·후)

○ 점 검 자 : 각 시설 담당자

○ 점검내용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황 및 이행여부 점검

한국전통문화전당 법정점검 현황

법령	점검종류		근거법령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주체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1	안전관리자업무	법 17조	안전상태점검	월2회	위 탁
	2	보건관리자업무	법 18조	보건상태점검	월1회	위 탁
	3	공정안전보고서(PSM)	법 44조	안전상태점검	1회/2년	위 탁
	4	위험성평가	법 36조	실시여부및개선활동	1회/년	위 탁
	5	작업환경측정	법125조,영95조	작업환경상태 점검	1회/반기	위 탁
	6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법93조	크레인,압력용기등	1회/2년(3년)	위 탁
	7	밀폐공간작업	규칙619조, 환경부지침	질식,중독,폭발위험	교육1회/년 훈련2회/년	자 체
	8	MSDS 관리	110조, 114조	관리상태,수시점검	채용시,변경시	자 체
	9	근로자교육	법29조	교육이수 여부	6시간/분기	자 체/위 탁
	10	관리감독자교육	법29조	교육이수 여부	1회/년	위 탁
	11	관리(총괄)책임자교육	법32조	교육이수 여부	1회/2년	위 탁
	12	근로자건강진단	법269조,280조	실시여부 및 후속조치	1회/년	위 탁
	13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규칙657조	조사여부 및 후속조치	1회/3년	위 탁
	14	직무스트레스평가	법5조, 규칙669조	평가여부 및후속조치	1회/2년	위 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1	소방시설정기점검	법25조	시설물상태	1회/월	위 탁
	2	소방시설종합정밀		작동기능점검	1회/반기	위 탁
	3	소방훈련	법24조	소방훈련	1회/2년	합동훈련 (완산소방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1	자제점검	법18조	자체점검	1회/년	자 체
	2	정기검사	법13조	정기검사	1회/1년	위 탁
시설물 안전법	1	시설물 정기점검	법11조, 12조	정기점검	1회/반기	자 체
	2	시설물 정밀점검		종합점검	1회/2년	위 탁

○ 추진 실적 : 안전보건 추진과제 100% 이행을 통한 시설물 사고 관련 안전한 재단 운영 달성

○ ISO45001 사후 1차 심사 결과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결과

프로 세스 단 계	표준 번호 및 경영 시스템 요구 사항	적 합 (SU)	중 부 적 (MA)	경 부 적 (MI)	권 고 (Ob)	비 고
Plan (계획)	**4 조직상황**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				
	4.2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				
	4.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				
	4.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5 리더십 과 근로자 참여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				
	5.2 안전보건 방침	√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				
	5.4 근로자 협의 및 참여	√				
	6 기획					
	6.1 리스크 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				
	6.2 안전보건목표와 목표 달성 기획★	√				
	7 지원					
	7.1 자원	√				
	7.2 역량 / 적격성	√				
	7.3 인식	√				
	7.4 의사소통	√				
	7.5 문서화된 정보	√				
Do (실행)	**8 운용**					
	8.1 운용 기획 및 관리	√				
	8.2 비상시 대비 및 대응	√				
Check (검토)	**9 성과 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 평가	√				
	9.2 내부 심사★	√				
	9.3 경영검토/경영평가(management review) ★	√				
Action	**10 개선**					

(조치)	10.1 일반사항	√				
	10.2 사건, 부적합 및 시정 조치			√		
	10.3 지속적 개선					√
사후 심사 필수 항목	★ 전회 심사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					
	★ 인증 및 인정 로고 사용 적합성 확인					
	★ 불만의 처리 결과					
	★ 변경 사항의 검토					
갱신 심사 필수 항목	★★ 내,외부 변경사항에 대한 효과성,관련성,적용 성 확인					
	★★ 인증 유지를 통해 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개선 되는 지 확인					
	★★ 경영시스템 운영이 방침 및 목표에 기여하고 있는지					
	★★ 인증유지 기간동안 인증 사용자로부터 불만사항이 처리 되고 있는지 확인					
부적합 현 황	중 부적(MA)	0				
	경 부적(MI)	1		1		
	권고(Ob)	1				1

○ 경부적 1, 권고 1

○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으나 차기 심사 때 확인 함.

※ 2024. 12. 06. 사후 1차심사 합격

○ 산업안전보건 이행실적

24년도 위험성평가 개선 계획 결과표				번 호	B2-1
부 서	홍보팀	개선완료일	2024. 08. 26	확 인 자	인미애
공정(작업)명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다목적실	개선예정일	2024. 08. 26	담 당 자	문지연

현실태 및 문제점	완강기 사용법 미게시로 화재 발생시 완강기 사용 미숙에 의한 신속한 대피 안되어 인명 피해 발생 위험	개선대책	완강기 사용법 잘보이도록 벽면에 추가 게시 (완강기 위치표시 위쪽에 사용법 코팅하여 부착 권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24년도 위험성평가 개선 계획 결과표				번 호	C1-1
부 서	시설관리팀	개선완료일	24.08.27	확 인 자	김배광
공정(작업)명	한국전통문화전당 5층 옥상	개선예정일	24.08.27	담 당 자	이제훈

현실태 및 문제점	불특정다수인이 실외기 격벽 넘을시 떨어진 재해 발생 위험	개선대책	"넘어가지마시오", "떨어질 위험" 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24년도 위험성평가 개선 계획 결과표				번 호	C2-2
부 서	시설관리팀	개선완료일	24.08.27	확 인 자	김배광
공정(작업)명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개선예정일	24.08.27	담 당 자	이제훈

현실태 및 문제점	방화문에 표지 미부착으로 방화문 앞에 물건 적치 또는 엔의 고정시 화염 차단안되어 대형 화재 발생 될 위험	개선대책	"방화문은 생명문" 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24년도 위험성평가 개선 계획 결과표				번 호	F2-3
부 서	한지산업팀	개선완료일	2024.09.05.	확 인 자	임현아
공정(작업)명	한지산업지원센터 지하 셀프제작소	개선예정일	-	담 당 자	권형진

현실태 및 문제점	비품창고 시건조치 안되어있어 불특정다수인 출입시 사고 발생 위험	개선대책	1.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 부착 2. 연쇄로 잠금 등 시건조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24년도 위험성평가 개선 계획 결과표				번 호	F3-3
부 서	한지산업팀	개선완료일	2024.09.05.	확 인 자	임현아
공정(작업)명	한지산업지원센터 지하 시제품제작소	개선예정일	-	담 당 자	권형진

현실태 및 문제점	테이블쏘 돌출되어있어 근로자 및 작업자 통행시 몸 부딪힐 위험	개선대책	돌출부에 스펀지 형태 등의 완충물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2024년 산업재해율

사업장명	(재)한국전통문화전당	대표자명	김인태
사업자번호	402-82-23618	산재 적용업종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 한국전통문화전당		
산업재해	2건		

○ 사망만인율

기간	사고사망만인율	
	기업	동종규모 평균
2020년(01월~2022년12월(3년 평균)	0.00	0.07
2020년01월~12월	0.00	0.06
2021년01월~2022년12월	0.00	0.08
2022년01월~2023년12월	0.00	0.19

※산출방식: (사고사망자/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10.000
※사고사망자: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업무상 사고사망자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 발생일로 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붙임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한국전통문화전당)_2025년 1부.
2.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1부. 끝.

붙임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한국전통문화전당)_2025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2025. 1.

한국전통문화전당

Contents

1. 목적 ····· 1
2. 적용범위 ····· 1
3. 재해원인 ····· 2
4. 예방 및 대비 ····· 2
5. 대응 ····· 3
6.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및 언론대응 6

붙임

1.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 8
2. 중대재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내용 ····· 9
3. 보고서식 ····· 12
4.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14
5. 위험성평가 실시 ····· 17

1 목 적

○ 이 매뉴얼은 한국전통문화전당 외4개소에서 직원, 시민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 등을 규정한 것임

※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지청에 즉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 동시 10명 이상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2명 이상 •동일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 질병자 10명 이상

2 적용범위

가. 상황범위

○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전주공예품전시관, 우리놀이터 마루달, 전주천년한지관에서 직원, 근로자, 시민에게 중대재해 발생

나. 기관범위

○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 전체 시설물

다. 적용기준

○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발생 시에는 이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기타 시설 등에 대한 복구 및 수습은 시설관리팀의 현장조

치에 따라 수행

라. 대상재해

○ 밀폐공간 질식, 사업장 등 화재, 연구실 화재, 공사장 침수, 상수도관 누수, 점검·작업 중 추락·감전, 공사장 붕괴, 염소 등 유해·유독가스 누출 등

3 재해원인

○ 시설물 노후, 순찰 및 점검 미흡

○ 작업자 등 부주의, 안전장구 미착용

○ 위험성평가 미흡·미실시, 안전시설 미흡

○ 안전교육, 안내표지판 미흡

○ 설계, 시공 불량 등

4 예방 및 대비

(1) 예방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반기1회 이상 (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붙임4 참조)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작업,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하여 추진

- 위험성평가 실시 (붙임5 참조)

○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 시설물 등 점검 및 조치

○ 작업자 교육, 개인안전 장구 지급 및 비치

○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 직원건강검진 실시 안내 및 유소견자 등 관리

○ 설계, 시공에 대한 확인 및 관리 감독 강화

(2) 대비

○ 비상대피 안내 : 담당부서(전당에서 발생한 경우 시설관리팀으로 안내방송 요청)

- 각 사업소는 사무실별 3급 과장·선임연구원이 안내하고 최종확인 후 본인 대피
- 체험실 · 대관장소 등은 업무총괄담당이 안내하고 최종확인 후 본인 대피
- 공사장의 경우 현장대리인·감독관이 안내하고 최종확인 후 본인 대피

○ 비상대피 안내도 부착 및 대피로 등 교육

○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현행화

○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동향보고 절차 적용)

○ 현장상황실 등 활용을 위한 천막 및 조명 확보

○ 응급구호 및 대피 훈련 실시 : 반기 1회 (소방훈련으로 대체가능)

- 훈련 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참여(기간제, 위촉직 직원포함)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포함

※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주천년한지관, 우리놀이터마루달은 관련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훈련은 기존대로 추진

5 대 응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1) 신고 및 접수

○ 신고는 120, 119, 112, 기획경영본부 및 각 사업소 대표번호로 신고를 받아 담당자에게 통보

○ 접수는 기획경영본부 기획경영팀에서 접수받아 담당자에게 통보

○ 직원, 근로자, 작업관리자 등으로부터 위험상황 또는 재해발생 접수

(2) 현장확인 및 상황보고

○ 현장 확인하여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본부장, 원장에게 즉시 보고

(3) 피해예방 조치

○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작업 중지 후 직원, 작업자, 시민 등 대피 조치

○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 출입·교통통제(필요 시 경찰서에 협조 요청)

(4)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제거

○ 유해·위험 요인 확인하여 위험도가 낮은 경우 보고 후 업무·작업 재개

○ 위험도가 높은 경우 본부장·원장에게 보고 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대책 마련하여 위험도를 낮춘 후 업무·작업 재개(필요 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마련)

상황접수 및 전달	⇒	현장확인 및 보고	⇒	업무 · 작업중지, 직원 · 시민 대피	⇒	출입 · 교통통제	⇒	위험도 확인 및 제거	⇒	업무 · 작업 재개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 신고 및 접수

○ 신고는 120, 119, 112, 기획경영본부 및 각 사업소 대표번호로 신고를 받아 담당자에게 통보 (접수 시 119 신고여부 확인 및 신고)

○ 접수는 기획경영본부 기획경영팀에서 접수받아 담당자에게 통보

○ 직원, 근로자, 작업관리자 등으로부터 재해발생 접수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사건 접수 시 **현장 보존**토록 안내

(2) 응급조치

○ 사상자 구급·구조 및 병원 후송 조치 (필요 시 소방서로 협조 요청)

※ **소방서 출동 후에는 구급.구조에 대해 소방서의 지시를 따라 이행**

○ 업무·작업 중지 후 작업자, 시민 등 대피조치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출입·교통통제(필요 시 경찰서(112)에 협조 요청)

(3) 현장확인 및 보존

○ 현장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 보존

(4) 상황보고·전파

○ 팀장, 본부장, 원장 보고 및 필요 시 시청 등 유관기관 상황전파

※ 담당부서는 본부장·원장 보고 후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로 상황보고

○ 홍보팀 팀장은 SNS 대응방 운영을 통한 실시간 상황공유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지체없이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중대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 동시 1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5) 「상황판단회의」 개최 (위험성평가, 작업개시 결정 등)

○ 기관장은 위험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 복구방법, 업무·작업개시 여부 결정, 위험수준을 경미한 수준으로 낮추도록 조치

(6) 피해자 및 가족 지원

○ 사고사실 안내, 피해자 및 가족 의료지원

○ 요구사항 확인 및 편의제공, 대응 시 정중한 태도 유지

(7) 피해복구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등 절차에 따라 복구 실시

※ 단, 원인규명이 안된 경우, 사고지점 일대는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8)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9) 재발방지대책 마련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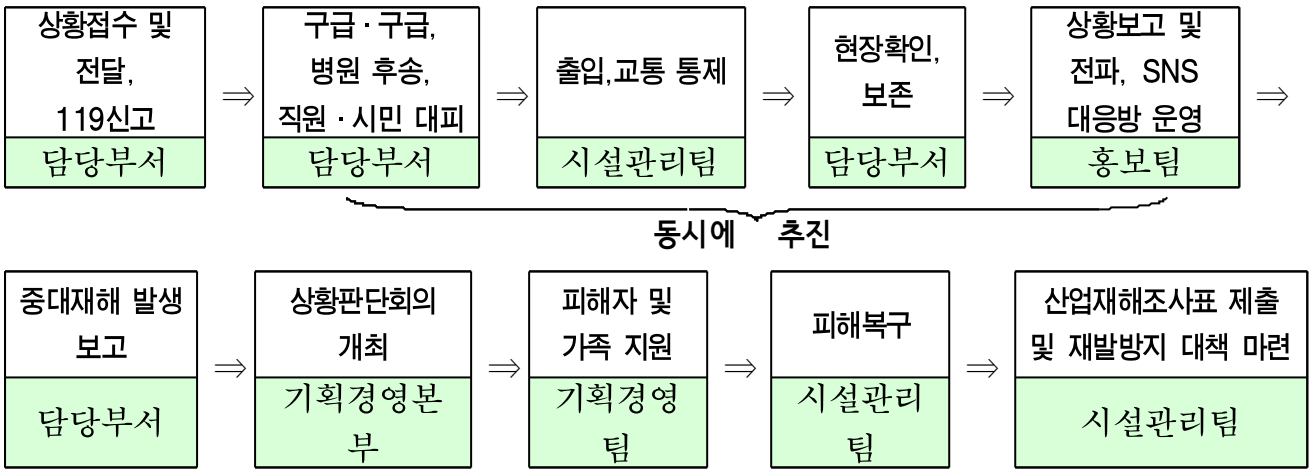

6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및 언론대응

(1)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 원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시청에 즉시 보고

○ 담당부서팀장은 본부장·원장 보고 후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에 보고

(2) 상황전파

○ 중대재해 발생 시 홍보팀장은 SNS 대응방 개설 및 관계자 초대하여 상황공유 및 전파

○ 필요 시 경찰서, 시청(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 등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및 협조요청

(3) 언론대응

○ 언론취재 시 붙임3의 서식에 취재내용 등을 작성하여 본부장·원장에게 즉시 보고

○ 담당팀장은 보도자료 작성 시 홍보팀으로 검토 요청

○ 대외 대응 시 통일성 유지를 위한 정보공유 및 교육

- 담당부서는 사고의 원인, 피해상황, 복구예정시간 등의 내용에 대해 SNS 대응방에 자료 공유 및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대외 답변 시 통일성 유지

붙임 1.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2. 중대재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내용

3. 보고서식

4.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5. 위험성평가 실시

붙임 1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최초(즉시)보고 (주관부서)	◦ 보고시기 : 중대재해 발생 즉시 ◦ 보 고 자 : 담당팀장·본부장 ◦ 내 용 - 발생시기, 피해규모, 추정원인, 주관부서 ◦ 보고대상 : 과장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 ◦ 주요역할 : 즉시보고 및 119신고
수시보고 (주관부서)	◦ 보고시기 : 중대재해 수습 시 수시 ◦ 보 고 자 : 담당팀장·본부장 ◦ 내 용 - 사고원인, 사고 수습 진행사항, 문제점, 시민불편사항 등 ◦ 보고대상 : 과장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 ◦ 주요역할 : 수시보고 및 수습 진행사항 수시보고
최종보고 (주관부서)	◦ 보고시기 : 중대해재 수습 시 수시 ◦ 보 고 자 : 담당팀장·본부장 ◦ 내 용 : 사고원인, 피해규모, 동원인력 및 장비, 대책 등 ◦ 보고대상 : 과장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

붙임 2

중대재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내용

상황단계	조치내용	소관
중대재해 신고 및 접수	❍ 120, 119, 112, 본부 및 산하기관 대표번호로 접수 - 접수 시 119신고여부 확인 및 신고 ❍ 직원, 근로자, 작업관리자 등으로부터 재해발생 접수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접수 시 현장보존토록 안내	접수부서 기획경영팀
⇩		
응급조치	❍ 재해자 구급.구조 및 병원후송 조치(필요 시 소방서로 협조 요청) - 소방서 출동 후에는 구급.구조에 대해 소방서의 지시를 따라 이행 ❍ 업무.작업 중지 후 작업자, 시민 등 대피조치	주관부서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출입.교통통제(필요 시 경찰서에 협조요청)	시설관리팀
⇩		
현장확인 및 보존	❍ 현장확인 및 보존 - 현장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보존(사진, 동영상촬영)	주관부서
⇩		
상황보고 및 전파	❍ 사업소 팀장, 본부장, 원장 보고 및 필요 시 구청 등 유관기관 상황전파 - 상황보고 : 주관부서팀장 - 보고 : 최초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 ❍ SNS 대응방 운영 및 상황공유 - 기획경영본부장·원장 상황 공유	홍보팀

상황단계	조치내용	소관
	❍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시 고용노동지청으로 즉시 보고** -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본부장 보고 후 원장,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 보고**	**담당부서**
상황판단회의 개최	❍ **원장은 위험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에 따라 수시 위험성 평가, 복구방법, 업무.작업개시 여부, 위험수준 경감 조치** - 상황보고 : 기획경영본부장·기획경영팀장 - 사업소 : 사업소 팀장	**기획경영본부**
피해자 및 가족 지원	❍ **사고사실 안내, 피해자 및 가족 의료지원** - 사상자 가족에서 연락 및 병원입원.장례 절차 지원 등 ❍ **요구사항 확인 및 편의제, 대응 시 정중한 태도 유지** - 심리치료, 현장방문 차량제공, 임시숙소, 음식 등	**기획경영팀**
피해복구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상황판단회의 결과 등 절차에 따라 복구 실시**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누수복구 매뉴얼, 단수.통수 및 수계전환 업무 지침, 수질민원 대응 매뉴얼 등 **※ 단, 원인규명이 안된 경우, 사고지점 일대는 소방서, 경찰서 등 원인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시설관리팀**
	❍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예산 등 지원** - 주관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지원 - 자체 인력.예산 등 부족 시 기획경영본부로 지원요청	**기획경영팀**

상황단계	조치내용	소관
산업재해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주관부서
재발방지대책 마련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주관부서
언론대응	❍ 언론취재 시 취재내용 등을 작성하여 본부 및 본청 언론담당관.안전총괄실 즉시 보고 - 상황보고 : 주관부서	해당부서
	❍ 언론대응 담당 지정 - 주관부서의 팀장 이상 간부 중 해당사건에 대한 많이 아는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언론대응의 통일성 유지 - 홍보과는 인터뷰 내용, 장소, 일정 등 검토 및 지원 ❍ 중대재해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 사고에 대한 유감표명, 피해자 위로 등 - 공간진흥팀은 기획경영팀과 협의 ❍ 대시민 재난정보 제공 및 시민행동요령 등 안내	홍보팀

붙임 3

OO사고 발생 및 대응상황 보고

(보고일)

□ 개　　요(필요 시 작성)

○ 일시/장소 :

○ 발생원인 :

□ 피해상황(필요 시 작성)

○ 인명피해 :　　명(사망　　명, 실종　　명, 부상　　명)

※ 피해자 인적사항 별첨

○ 재산피해 :

○ 기　　타 :

□ 긴급급수 및 수습상황

○ 조치내역 : 구급사항, 복구사항, 언론 모니터링 등

○ 동원상항

- 소방인력 및 장비
  - ▸ 인력 :　　명(소방공무원　　명, 의용소방대　　명)
  - ▸ 장비 :　　대(OOOO　　대, OOOOO　　대, OOOO　　대)
- 소방 외의 인력 및 장비
  - ▸ 인력 :　　명(공무원　　명, 경찰관　　명, 민간인)

※ 민간인 :　　명(대한적십자사　　명, 자율방재단　　명, OOOO　　명)

- ▸ 장비 :　　대(OOOO　　대, OOOOO　　대, OOOO　　대)

□ 기타 지원·협조사항 (타 부서 및 기관·단체 등)

□ 향후 전망 및 대책 (복구, 피해자 지원 등)

작성자	담당 : ▽▽▽☎5678, ○○팀장 : ◎◎◎☎000-0000, ○○본부장 : △△△☎1234

언론 취재사항
보고(서식)

(보고일)

□ 취재일시 : 20 .00.00.(0요일) 00:00~00:00

□ 매 체 명 :

○ 취재기자 : 000 기자(**********), 000 기자 ……

□ 취재방법 : 현장동행 취재, 동영상 촬영, 000 직원인터뷰

□ 취재장소 : 한국전통문화전당 지하 기계실(자세히)

□ 응 대 자 : 한국전통문화전당 홍보팀 000

□ 취재내용

○

○

□ 언론보도 계획

○ 보도일시 :

○ 보도매체 : 000 신문 0면, 000 9시 뉴스

작성자	담당 : ▽▽▽☎5678, ○○팀장 : ◎◎◎☎000-0000, ○○본부장 : △△△☎1234

붙임 4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

종류	세 부 방 법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정의 -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 사업장 순회점검 시 사전준비 -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와 질병의 기록 - 이전에 실시한 점검 사항의 기록 - 유해·위험작업이나 설비의 특이한 사항 ❍ 순회점검 시 유의사항 - 점검자는 사업장의 작업내용을 잘 알 것 - 교대 작업인 경우 점검 시간대를 조정할 것 - 점검이후 필요할 때마다 점검자 회의를 개최할 것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정의 - 현장의 종사자와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 청취조사의 실시준비 - 청취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사전에 선정 - 현재의 작업을 잘 알고 있는 사람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사람 ❍ 청취조사 실시상의 유의사항 - 청취조사는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조사표 사용 - 조사내용은 작업자의 체험에 기초하여 조사 - 특정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말 것 - 청취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비밀보호 - 청취조사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종류	세 부 방 법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정의 - 사업장에서 일어난 재해발생보고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자료, 유해·위험한 상태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 안전보건자료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회의록 또는 기록 - 발생한 사고나 질병의 보고서 -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 - 안전보건 활동 기록 등 ❍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에 따라 실시 시 유의사항 -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수행하고 있던 작업을 대상으로 할 것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상회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할 것 - 건강진단에서는 유소견자가 행하고 있는 작업을 채택할 것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정의 -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중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의 작성 - 현재 수행하는 작업 중에서 특히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선정 - 선정한 작업에 대하여 단계별로 유해·위험요인 기재

*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사업장에서 실제로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하고, 사업장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기타의 방법을 자유롭게 사용함

□ 유해위험요인 개선

○ 유해위험요인 개선원칙

- 제거 : 밀폐공간 내 작업이 필요 없도록 구조 변경 등 위험요소를 물리적으로 제거
- 대체 :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등 위험성이 낮은 위험요인으로 대체
- 공학적 통제 : 방호장치의 설치, 환기장치 등을 통해 위험요소와 작업자 격리
- 행정적 통제 : 작업절차서 정비, 작업허가제 도입 등 작업방법 변경
- 개인 보호구 착용 : 제거, 대체,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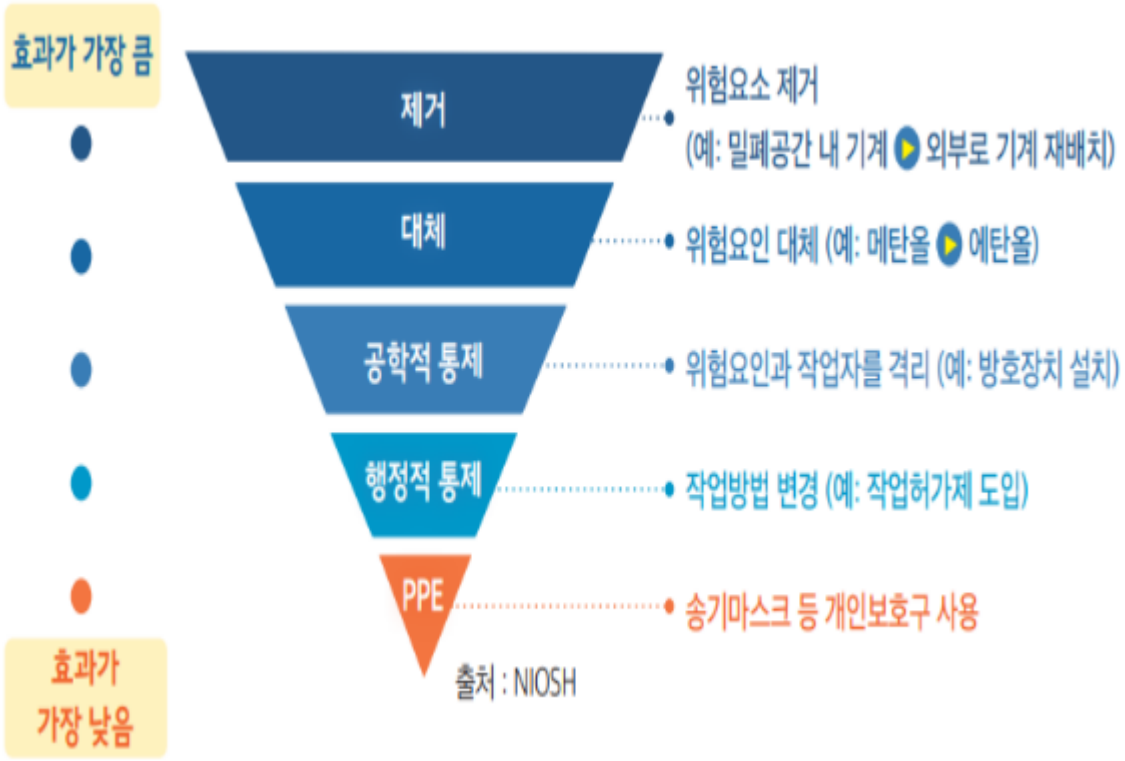

붙임 5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의 정의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위험성평가 대상 및 실시 시기

○ 대상 : 모든 사업장

○ 실시시기

- 최초평가 :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 공정의 신규도입·변경, 재해발생 시 작업재개 전

□ 위험성평가 추진 방법

○ (용역) 위험성평가 전문업체 용역 의뢰

□ 위험성평가 추진 절차

○ (사전준비) 평가대상 선정 등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관련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 실행

○ (기록)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기록

□ 위험성평가 추진 절차

○ 위험성 관리

- 결정된 위험수준을 경미수준 위험으로 낮춰야하며, 위험성을 줄이는 작업은 과학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함

□ 위험성평가 간주

○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

○ 그 밖에 법과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붙임 2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19. 3. 28.]
[일부개정 2020. 6. 5.]
[일부개정 2021. 1. 18.]
[일부개정 2022. 8. 31.]
[일부개정 2024. 9.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 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뿐 아니라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중점기관”이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란「산업안전보건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
   나. 공공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다. 공공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핵심기반
   라. 공공기관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마. 공공기관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환경을 확보할 의무를 지는 연구실
   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현장

제5조(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기관
2.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실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
3.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무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이 없어진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을 위한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동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6장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① 공공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에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이사회가 없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을 거쳐 확정한다.

⑤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제6조의1(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공공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과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주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2조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을 심사함에 있어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및 주요내용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2장 인력 · 조직 구성

제7조(인력확충) 공공기관은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안전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성 강화) ① 공공기관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 설정, 전문 교육 이수 등 안전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교육) ① 공공기관은 소속 경영진, 관리자 및 현장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장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기관의 장 및 안전 관련 임원은 임기 중 1회 이상 안전관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담당업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책임자 및 전담조직)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임원(임원

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 한명을 안전관리의 책임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경영위원회)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안전관리 중점기관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

제13조(안전관리 규정 작성)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제14조(안전조치) ① 공공기관은 주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위험성평가) ① 공공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물 안전점검) 공공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①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하여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가 발주자 또는 원청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안전투자) 공공기관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기술 개발 등) ① 공공기관은 사물인터넷, 무인화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안전·보건관리 및 건설재해예방 업무 등을 민간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민간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의 책임

제20조(임원의 직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본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책무와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책임) ①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0조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한 결과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하고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② 주무기관의 장이 기타공공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제1항에 따라 해임 또는 해임 건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투명경영

제22조(안전공시) 공공기관은 법 제11조와 제12조 및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산업재해 통합관리)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공표의 대상이 된다.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전기업(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 전기판매업을 포함한다)

제24조(사고 기록 및 보존) 공공기관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의1(사고사망 등 자료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발주·도급·직영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중대재해 포함) 및 사후조치 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4조의2(재발방지계획 수립) 공공기관은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6장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제25조(안전관리등급 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전반을 심사하여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등급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5등급으로 결정한다.

③ 안전관리등급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합의로 결정하며, 안전관리등급 결정전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의 심사 및 결정을 위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6조(안전관리등급의 확정 및 공개)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이 합의한 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안전관리등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안전관리등급을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안전관리등급의 공개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공공기관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심사자료의 제출 요청 등)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은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현장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은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 지연 제출 또는 현장검증 방해 등으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제 대상기관의 범위, 심사기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의 구성, 안전관리등급 결정의 절차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2024. 9.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공공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공공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공공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통보한 날로부터 새로이 지정 또는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6.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공공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실적 점검은 2020년 안전기본계획의 이행실적으로 한다.

부 칙 <2019. 3.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공공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본계획 수립 시기) 공공기관은 이 지침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해에 한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기본계획을 6월 말까지 수립한다.

제3조(신규지정 공공기관 특례) 법 제6조에 따라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별표1> 안전경영책임보고서 포함 내용

Ⅰ. **전년도 기본현황**

1. 안전관리 대상 시설 및 작업장 (보안상 공개가 불가한 경우 제외)
2.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실적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현황 및 역할
4. 안전 예산 현황
5. 위험성평가 이행·추진 현황
6.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현황

Ⅱ. **전년도 실적 및 평가**

1. 안전경영 방침 및 활동·실적
2. 주무부처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3.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4. 대국민 안전 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실적

Ⅲ.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 내용**